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시험

인카금융서비스

제2회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

1	2	3	4	5	6	7	8	9	10
③	③	①	①	③	④	①	②	②	④
11	12	13	14	15	16	17	18	19	20
④	④	③	③	④	④	④	①	②	①
21	22	23	24	25	26	27	28	29	30
①	③	②	④	③	②	①	③	②	②
31	32	33	34	35	36	37	38	39	40
②	④	②	③	④	②	③	②	③	④
41	42	43	44	45	46	47	48	49	50
③	④	④	②	④	③	①	②	③	④
51	52	53	54	55	56	57	58	59	60
②	④	③	④	②	①	④	③	③	③
61	62	63	64	65	66	67	68	69	70
①	③	④	④	④	④	③	②	④	④
71	72	73	74	75	76	77	78	79	80
④	③	①	③	③	④	③	④	④	①
81	82	83	84	85	86	87	88	89	90
②	③	④	④	④	④	④	③	③	②
91	92	93	94	95	96	97	98	99	100
④	①	①	③	①	④	③	③	③	③

제1과목 투자권유 법규(금융소비자보호법 포함) [13문항]

1. ③
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한다.

2. ③
판매업자의 변경, 폐쇄형 펀드에서 개방형 펀드로의 변경은 수익자총회 의결사항이 아니다.

3. ①
감독이사는 **2인 이상** 선임해야 한다.

4. ①
투자신탁 외의 형태의 집합투자기구(회사형펀드, 조합형펀드)는 등록신청 당시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**1억원 이상**이어야 한다.

5. ③
투자신탁재산의 운용, 수익증권 발행, 투자신탁의 설정·해지는 집합투자업자 역할이다.

6. ④
판매수수료는 **납입금액의 2/100 이내**,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**연평균가액의 1/100이내**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.

7. ①
집합투자재산의 **10%를 초과**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할 경우 환매연기를 할 수 있다.

8. ②
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재산에 대해 회계기간 말일로부터 **2개월 이내**에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.
다만, 자산총액이 **300억원 이하**인 집합투자기구는 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된다.

9. ②
펀드순자산총액의 **10%이내**에서 금전차입이 가능하고, 이해관계인이 되기 **6개월 이전**에 체결한 계약은 허용된다.

10. ④
다.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**10만원 이하**인 경우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**집합투자규약에 명시**되어 있어야 한다.
라.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·교부비용은 **집합투자업자가 부담**한다.

11. ④
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 판매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**불공정영업행위 금지**에 해당한다.

12. ④
손해배상금액 추정 조항은 자본시장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에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지우는 **입증책임의전환 조항이 신설**되어 있다.

13. ③
[위법계약 해지권]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행위로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[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]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고의·과실 입증책임을 금융회사 등으로 전환
[징벌적 과징금] 위반 시 수입 등의 50% 까지 과징금 부과

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토마토패스에 있습니다.

제1과목 직무윤리 · 투자자분쟁예방 [14문항]

14. ③
금융소비자를 합리적 인간상을 전제하는 것은 전통적인 관점이다.

15. ④
신의칙위반이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경우, 이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하더라도 법원이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.

16. ④
매매회전율이 높았을 때의 수익달성 여부는 과당매매를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.

17. ④
차단대상 부서 간에 공동으로 수행하는 광고 및 마케팅 행위는 정보교류차단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.

18. ①
투자권유준칙 순서는 ㉠ → ㉡ → ㉢ → ㉣ → ㉤이다.

19. ②
가.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,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
나.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·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으로 이용해서 장내파생상품을 투자권유하는 행위는 부당권유 금지대상에 해당된다.
※ 일반투자자 : 장내파생상품, 장외파생상품 금지
전문투자자 : 장외파생상품만 금지

20. ①
개정 전의 내용이며 개정(2017.3.22.) 후에는 제공한도와 수령한도가 모두 폐지되었다(대신 내부통제 강화).

21. ①
임직원이 외부강연이나 기고 등의 대외활동을 할 때 회사의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**사견임을 명백히 표현**하고 밝힐 수 있다.

22. ③
①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는다.
②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(준법감시인 해임시에는 이사총수의 2/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, 준법감시인의 임면 후에는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)
④ 준법감시인은 위임범위와 책임한계가 명확한 경우 위임이 가능하다.

23. ②
금융투자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때는 **이사회결의**를 거치며,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**이사회결의**를 거쳐야 한다.

24. ④
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을 대상으로 해임요구 등을 할 수 있고 직원을 대상으로도 면직요구 등을 할 수 없다.
※ 금융투자협회의 경우 자율규제기관이므로 임직원에 대해서는 **제재의 권고만 가능**하다.

25. ③
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'살아있는 개인'에 대한 정보이므로 사망자 정보는 제외된다.

26. ②
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협회는 조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며, 위원회는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조정 또는 각하 결정을 원칙으로 하나, 부득이한 경우에는 **15일 이내**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, 분쟁조정신청 당사자는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**30일 이내**에 재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.

27. ①
㉠ 분쟁내용의 통지 및 합의권고
㉡ 조정위원회 회부
㉢ 조정안의 작성
㉣ 조정안의 제시 및 수락권고

제1과목 펀드영업실무 [8문항]

28. ③
펀드 판매 단계(영업점을 방문한 경우를 전제)는 투자자정보파악 → 투자자유형분류 → 적합한 펀드 선정 → 설명

29. ②
저축일을 일 단위로 정한 경우는 수익증권의 **최초 매수일**(12.9)로부터 계산하여 저축기간이 **만료되는 날**(12.18)의 **다음영업일**(12.19)이 만기지급일이다.

30. ②
임의식에서 저축재산 인출을 할 경우 환매수수료가 징구된다.

31. ②

②	2025.2.28.	6개월	2025.8.31

저축기간을 월 또는 연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월의 **최초 납입 상당일**(2025.8.28.)이 만기지급일이다.

32. ④
판매회사는 저축자의 청구에 따라 저축재산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**선입선출법**에 따라 지급한다.

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토마토패스에 있습니다.

33. ②
저축자가 세금정산을 목적으로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대금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재매입할 경우,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및 매입하는 수익증권이 판매수수료는 연 2회에 한해서 면제한다.
※ 이 경우 재매수한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계산시작일은 **수익증권 매수일**로 함

34. ③
소규모 투자신탁을 해지함에 있어 저축자가 그 상환금으로 판매회사로부터 안내받은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저축하는 경우 **선취수수료**를 면제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도 **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**를 면제한다.

35. ④
ELS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.

제1과목 투자권유 [15문항]

36. ②

① 위법계약해지권 대상
②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의 **50% 이내** 범위의 과징금 대상
③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
④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, 기관 및 임직원 제재 대상

37. ③
적정성 원칙 적용대상 상품은 **인덱스펀드를 제외**한 파생형 집합투자증권(레버리지·인버스 ETF 포함)이다.

38. ②
금융소비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의 투자를 하는 경우 '투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표'의 위험도 분류기준보다 **완화된 기준을 적용**하여 투자권유 할 수 있다.

39. ③
전문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여 장내파생상품을 투자권유하는 행위는 허용된다.

40. ④
모두 손실보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.
가.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
나.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
다.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
라.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
※ 단, 신노후생활연금신탁, 연금신탁, 퇴직일시금신탁 상품 가입 시 법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있다.

41. ③
금융투자회사가 금융소비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**6영업일**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42. ④
회사는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법·부당행위 또는 계약 위반행위와 관련된 **보수의 차감**, 투자권유 **위탁계약의 해지**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부실 등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, 투자자의 확인을 거쳐 투자권유대행인 **관리계좌를 해지**할 수 있다.

43. ④
위법·부당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**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**

44. ②
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,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.

45. ④
고객의 서명 또는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고객이 직접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.

46. ③
자산배분유형군은 **'동일자산간'** 또는 **'이종자산간'**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, 세부자산배분유형은 유형간 변동성이나 종목의 특성 및 분산투자 효과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.

47. ①
유사 금융상품과의 수익률 수치는 투자권유 시 일반투자자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다.

48. ②
투자자정보는 반드시 투자자가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. 판매직원이 면담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컴퓨터 등에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확인받는 방법도 가능하다.

49. ③
해당 금융소비자가 '적정성의 원칙 대상 상품'의 거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.

50. ④
매 분기 1회 이상 금융소비자의 재무상태,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하여 줄 것으로 서면, 전자우편,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시스템 등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토마토패스에 있습니다.

제2과목 펀드의 구성·이해 [16문항]

51. ②
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는 **임의해지 사유**에 해당한다.

52. ④
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이 시장상황에 맞게 운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니다. 신탁업자는 소극적 감시 역할만 수행한다.

53. ③
수익자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한 총좌수가 발행된 총좌수의 **1/10** 이상일 것

54. ④
① 부동산이 신탁재산의 50%이상을 차지하는 수익증권을 펀드재산의 5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펀드 : 부동산펀드
②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펀드재산의 5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펀드 : 특별자산펀드
③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식과 채권에 펀드재산의 5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펀드 : 특별자산펀드

55. ②
단기금융펀드는 금전의 대여(단기대출)는 가능하나, **증권의 차입과 대여는 불가능**하다.

56. ①
모두 틀린 지문이다.
-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**90일** 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한다.
- 전환형집합투자기구는 동일한 집합투자기구 세트 내에서 펀드 간 이동이 가능한데, 이때 환매수수료가 **유예**된다.
- 종류형집합투자기구는 **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**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수 등 수수료체계가 동일해야 한다.
- **재간접집합투자기구**는 운용회사의 운용능력을 아웃소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.

57. ④
ETF는 자산총액의 **30%까지** 동일종목의 증권으로 운용이 가능하다.
※ 동일법인에 운용이 20%이다.

58. ③
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적격투자자와의 거래의무는 공모·사모집합투자기구 **공통으로 적용**된다.

59. ③
대부분의 펀드는 개방형이고 개방형펀드는 비상장형이다.

60. ③
완전복제법으로 지수를 추적할 경우 인덱스펀드의 포트폴리오와 추적대상지수의 포트폴리오 간에 차이는 제거된다.

61. ①
액티브운용전략으로는 상향식,하향식 방법이 있고, 패시브운용전략에는 알파추구전략, 시스템트레이딩펀드, 포트폴리오보험, 롱숏형, 차익거래형, 인덱스 등이 있다.

62. ③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 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는 펀드재산의 100%를 투자할 수 있다.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경우 공익성을 고려하여 100%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
63. ④
집합투자재산의 50%를 초과하여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분류되며, 펀드재산의 나머지 금액으로 증권, 특별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.

64. ④
원금보전불가가 원칙이지만 '연금신탁'이 경우 원금보전이 가능하다.

65. ④
연금신탁의 적립액에 대해서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 5.5%~3.3%의 분리과세율이 적용된다

66. ④
신탁업자와 투자자의 합의에 따라 성과보수 기준을 정하는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제2과목 [펀드투자] 펀드평가 [4문항]

67. ③
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자와 운용회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펀드의 성과평가이다.

68. ②
종합주가지수를 벤치마크로 하고 있는 펀드의 일정 수익률은 +6%이었다. 그리고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은 +10%이었다. 그렇다면 베타는 0.6이며 이 펀드는 방어적으로 운용되는 펀드라고 할 수 있다.

69. ④
측정기간을 일치시키면 객관적으로 운용사간의 성과비교가 가능하지만 운용기간 중 투자성과의 이전 가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

70. ④

펀드수익률 20%, 무위험수익률 6%, 벤치마크수익률 8%, 표준편차 10%

샤프비율 = (펀드평균수익률 - 무위험 이자율) / 펀드의 표준편차
(20 - 6) / 10 = 1.4

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토마토패스에 있습니다.

제2과목 [펀드투자] 펀드의 투자관리 [10문항]

71. ④
기본적 분석의 도구가 아무리 정교하다 하더라도 증권선택이나 시장예측활동이 장기적으로는 자산배분 정책에 따른 수익률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이다.

72. ③
국내단기금융시장의 벤치마크는 **CD91일물**이다(국제시장-주로 LIBOR 3개월물)
※ MSCI : Morgan Stanley Capital
ACWI : All Country World Index

73. ①
- 자산집단의 과거 장기간 수익률을 분석하여 미래의 수익률로 사용하는 방법이다.
- 자본시장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기가 부적절한 방식이다.

74. ③
B주식의 수익률 = 1.5 + 2.0 + 5.5 = 8.5%

75. ③
전략적 자산배분 시장가치접근법, 위험-수익최적화 방법, 투자자별 특수상화을 고려하는 방법, 다른 유사한 기관투자기관의 자산배분을 모방하는 방법이 있다.

76. ④
두 주식의 수익률 평균은 모두 10%인데 X의 수익률분포(-40% ~ +60%)가 Y의 수익률분포(-10%~+30%)보다 넓으므로 X가 더 위험하다고 본다.

77. ③
증시가 비효율적인 것을 전제로 과소 혹은 과대평가된 증권에 투자하여 일정한 위험수준에 상응하는 투자수익 이상의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**전술적 자산배분**이라고 한다.

78. ④
증권시장의 과잉반응현상을 이용하는 전략은 전술적 자산배분이다. 전술적 자산배분의 이론적 배경은 균형가격 산출(=내재가치), 과잉반응 현상, 평균반전과정, 역투자전략이 있다.

79. ④
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경우 이자지급형자산에 투자하면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손실을 본다.

80. ①
시장가치접근법은 포트폴리오 내 구성비중을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율과 동일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다. 소규모 자금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장 균형 포트폴리오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부적절하다.

제3과목 [부동산펀드] 부동산펀드 법규 [5문항]

81. ②
개발형은 법인격이 있으며 유한책임을 지는 법적형태가 적합하며, 상장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**부동산투자회사**이다.

82. ③
우체국금융으로부터 차입은 불가하다. 또한, 신용협동기구(신협, 새마을금고, 농수협 단위조합)로부터의 차입도 불가하다.

83. ④
④는 100% 투자대상이 아니다. 부동산펀드가 공사모 구분없이 펀드재산의 100%를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증권,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, 주택저당증권이다.

85. ④
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액을 **공정가액**이라고 한다.

85. ④
신규투자자가 매입한 경우는 추가발행 예외 사유가 아니다.

제3과목 [부동산펀드] 부동산펀드 영업실무 [15문항]

86. ④
투자기간이 제일 긴 것은 **Equity투자의 개발형**이다.

87. ④
공모펀드는 계약조건의 변경 등이 쉽지 않지만, 사모펀드는 가능하다. (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)

88. ③

Debt투자	Equity투자 (실물매입형)	Equity투자 (개발형)
대출형 부동산펀드	임대형부동산펀드	개발형부동산펀드

89. ③
최소자본금은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50억원, 자기관리리츠는 70억원이다.

90. ②
실물형부동산펀드에는 임대형, 개량형, 경공매형, 개발형, (매매형)이 있다.

91. ④
우리나라는 **대부분 대출방식(Debt financing)**으로 PF에 투자한다.

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토마토패스에 있습니다.

92. ①
※ 제한물권의 종류

용익물권	담보물권
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	유치권, 질권, 저당권

93. ①
사업부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은 시행사를 통한 신용보강수단이다.
※ 사업부지 매입은 시행사가 하는 것이며, 따라서 시행사에게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을 요구한다.
※ ②, ③, ④는 모두 시공사를 통한 신용보강수단이다.
시공사(건설사)의 책임준공확약, 지급보증, 채무인수는 PF참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신용보강수단이다.

94. ③
개발형부동산펀드는 부동산펀드가 직접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.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시행법인(시행사)에게 대출을 해주는 펀드는 대출형부동산펀드이다.

95. ①
사업계획서는 **개발형 펀드**에 해당하는 내용이다.

96. ④
기회추구전략은 고위험-고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개발되지 않은 토지에 투자하여 개발하거나, 저평가된 시장이나 교통이 덜 발달한 지역의 토지 등에 투자한다.

97. ③
LTV나 DTI의 비율이 낮아지면 대출여력이 감소하여 부동산의 수요가 줄어든다. 즉 LTV나 DTI비율을 낮추는 것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수요억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.

98. ③
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시장에 공개되거나 유통되어도 부동산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은 주식시장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다.

99. ③
① 부동산의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, 유사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
② 건설 중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잔금비율을 높여 건축기간 중 발생하는 위험에 노출되는 금액을 최소화한다.
④ 임대형 부동산은 사업초기의 위험보다 매각시점의 위험이 가장 높다.

100. ③
경공매형펀드는 법률위험, 자산평가위험, 비용증가위험이 있다.

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토마토패스에 있습니다.